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9년 2월 1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기부증서의 발급 규정(안 제4조)

❍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공지

-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 심의에 대해 규정

❍ 위원회 구성(안 제7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규정(안 제8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기부자 예우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로 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자 명단을 부착 보존, 각종 구행사초청,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지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를 통해 기부자 예우의 방안으로 명예의 전당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등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부자가 존재하는 바, 향후 타 법률에 의한 기부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는 등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81 호

제출연월일: 2019. 2.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부증서의 발급 규정(안 제4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라.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 심의에 대해 규정함

마. 위원회 구성(안 제7조)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3)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함을 규정함

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규정(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 ·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 17. ~ 2. 7. / 21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기부금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6조에 따른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의 설치·운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